

충청북도의료취약지구내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3. 제안이유

- 적용시한이 만료됨에(1991. 12. 31)따른 시한연장임.
- 목적 :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민간병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정부의 의료취약지구 및 인력보강대책에 의하여 선정된 지역에서
- 병원설립자로 지정된 자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환자수송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제

5. 검토보고

- 정부의 의료취약지구 의료시설 및 인력보강대책에 의하여 선정된 지역(영동군, 진천군, 단양군 관할지역)안에서 병원설립자로 선정된 자가 병원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환자수송용 자동차를 취득·등기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본 조례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민간병원의 유치를 촉진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기위하여 충청북도의료취약지구내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